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2. 7.
기획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강한곤 의원 외 4명(박왕규, 박정환, 임미연, 이진환)
- 발의일자: 2025. 1. 23.(목)
- 회부일자: 2025. 1. 23.(목)
- 상정 및 의결: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2025. 2. 6.)

2. 제안이유

-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사회에서 달서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국제행사의 규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5. 1. 23. ~ 2. 4.) 결과: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는 국제행사 규모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는 국제행사를 직접 유치하거나 유치한 민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지역에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지원으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구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행사대회의 유치지원 업무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되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